<의안번호 제2007-30호>

_ 거청군광설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가정조례안 _ - 검 토 보 고 서 _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9. 18.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7. 9. 20.

2. 개정이유

장묘문화의 변천으로 다양해진 장묘방법별 용어를 보다 현실 적이고 순화된 우리말로 표기하고, 공설일반묘지 중 재정비 사업을 한 곳은 공설공원묘지로 분류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거창군 공설묘지조례」로 간결하게 함
-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장묘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용어를 순화함
 - 납골 ⇒ 봉안(안 제2조·제6조·제13조·제15조·제16조의1)
 - 묘지에 매장 ⇒ 장묘시설에 안치(안 제5조제2항제2호)
 - 납골당 ⇒ 봉안시설(안 제16조의1)
- 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함

- 각호 ⇒ 각 호(안 제2조·제6조)
- 제16조의1 ⇒ 제16조의2(안 제16조의1)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안 제5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22조)
- 라. 일반묘지를 정비하여 공원묘지로 변경된 곳의 명칭을 수정함 (안 별표 1).
 -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 고제공설공원묘지
- 마. 납골묘 및 납골당의 명칭을 수정함(안 별표 2).
 - 납골묘 ⇒ 봉안묘, 납골당 ⇒ 봉안당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07. 5. 21. ~ 6. 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25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1의 개정내용은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를 정비하여 고제공설공원묘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묘지에서 공원묘지로 변경하는 사유와 묘지 정비에 필요한 예산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2007. 5. 25 전부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08. 5. 26일부터 인데 개정 조례안 부칙에서 규정한 내용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행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과는 맞지 않으므로 상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부칙규정을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중에서 수정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 (1) 조례 제9조(설치기간)제1항 본문 중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제2항의 규정에서
 -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으로 수정 검토되어야 하며,

- (2) 조례 제9조(설치기간)제2항 본문 중 '설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도 상위법에서 허가 사항이 아니라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므로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 (3) 조례 제10조(사용권의 소멸등)제1항제2호 본문 중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한 내용도 '설치 기간 연장신청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수정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8. 5. 26시행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6. "분묘"라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 의 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 는 자
-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

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현행시행법률)

- 第17條 (墳墓의 設置期間)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私設墓地에 設置된 墳墓의 設置期間은 15年으로 한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이 경과한 墳墓의 緣故者가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墓地의 設置·관리를 許可받은 者에게 당해 設置期間의 연장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15年씩 3回에 한하여 당해 設置期間을 연장하여야 한다.
-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을 算定함에 있어서 合葬墳墓의 경우에는 合葬된 날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 ④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관할 區域안의 墓地의 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5年이상 15年 미만의 기간내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 設置期間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 設置期間의 延長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